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3. 11.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3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9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3.10.31) 보류
제10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3.11.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정책보조단체별 보조금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둘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게 됨으로써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6조의 제1항에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안 제6조 제1항)
- 제6조의2에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 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하여 심의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신설(안 제6조의2)
- 제6조의3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안 제6조의3 제1항)
- 제6조의3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신설(안 제6조의3 제2항)
- 제6조의3 제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를 신설(안 제6조의3 제3항)
- 제6조의 3 제4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4(수당 등) 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안 제6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보조금 교부결정을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친으로서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전교부 결정에만 참여하고 보조금 교부 후 사후 발생하는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제11조)」 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제12조)」에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였는 바

이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로 볼 때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사전 교부결정에서부터 사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까지 참여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본 조례 제6조의3 제1항의 위원회구성 중 위원수를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6조의3 제1항의 내용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
------------	----

제출년월일 : 2003. 10. 2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정책보조단체별 보조금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뮤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게 됨으로써,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 제1항에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안 제6조 제1항)

나. 제6조의2에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 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심의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신설(안 제6조의2)

다. 제6조의3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안 제6조의3 제1항)

- 라. 제6조의3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신설(안 제6조의3 제2항)
- 마. 제6조의3 제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를 신설(안 제6조의3 제3항)
- 바. 제6조의3 제4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단체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3 제4항)
- 사. 제6조의 4(수당 등) 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안 제6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2003. 9.19~9.27) : 의견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파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되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선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전 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의2(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심의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3(위원회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4(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u>교부여부</u>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교부여부를 결정되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선정의 차오 유무	

현 행	개 정 (안)
<p>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p> <p>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p> <p>③ 전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신 설 >	<p>제6조의2(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심의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신 설 >	<p>제6조의3(위원회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신 설 >	<p>제6조의4(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